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 세미나

| 일시 | 2026. 4. 13. | 월 | 13: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조발제

김재형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대법관)

주제발표

정 란 |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박사)

좌장

이우영 | 한국입법학회 회장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박상철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 기술)

이정우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재민 |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서기관

황성필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양희철 |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오성헌 |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운

| 주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

 사단
법인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 세미나

개 회 사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04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회장	06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08

축 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1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2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4

기조발제	인격권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입법론	19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대법관)	

주제발표	시시대 복지의 근거로서의 인격권	65
	정 란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박사)	

좌 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회장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토 론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I 기술)	75
	이정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79
	김재민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서기관	83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87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93
	오성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99

개회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운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운 국회의원입니다.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한국입법학회 이우영 회장님,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옥 회장님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는 산업과 일상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 차별과 배제의 문제, 노동과 돌봄의 변화까지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권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의 인격권을 중심에 둔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AI 시대에 인격권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복지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AI 시대에서 인격권의 의미와 함의’를 주제로 기초발제를 해주실

김재형 교수님, ‘AI 시대 복지의 헌법적 근거로서 인권권’을 발표해주실 정란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에 함께해주실 모든 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저는 ‘AI for Humanity’,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인공지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기술은 속도를 만들고, 정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법조계와 함께 AI 시대의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 혁신과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AI 시대 인권권의 기준과 제도적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운

개회사

한국입법학회 회장
이우영



안녕하세요. 한국입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우영 교수입니다.

오늘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최보운 국회의원님,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옥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한국입법학회를 대표하여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지정토론을 맡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김재형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격권의 주체와 내용, 나아가 그 보호 범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법학의 중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알고리즘 행정의 확산은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자율성 훼손, 차별과 배제의 위험을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복지·돌봄 영역에서도 중대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돌봄 혁신은 사회보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 보호와 인간적 돌봄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보장 원리에 기초한 정교한 입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격권과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입니다. AI 시대 인격권의 개념과 그 함의를 새롭게 모색하고, 복지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향후 입법·정책 형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입법학회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기본권, 디지털 행정과 규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와 실무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함으로써,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한국입법학회 회장 이우영

개회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국민의힘 최보운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입법학회,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함께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발제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과 방향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편향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확산은 노동과 돌봄의 구조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는 AI 시대에 인격권의 의미와 복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정책적 과제와 사회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깊이 있는 논의가 향후 정책과 입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축사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보운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우영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입법학회 관계자 여러분,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및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기초발제를 맡아주신 김재형 교수님과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AI는 산업과 경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노동 구조의 재편, 돌봄의 공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위협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또한, 인격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복지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AI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AI 시대에 인격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경청하여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장 동 혁

축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보운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산업과 일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그리고 복지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성, 차별과 배제의 문제, 노동과 돌봄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의 중요성 또한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시대의 인격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인격권의 의미와 복지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정책적 함의와 사회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모이는 오늘 논의가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과 인간의 존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노동과 복지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언 석

축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점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보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입법학회,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별과 배제, 노동시장과 돌봄 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인격권을 정책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 인격권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복지국가의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입법과 정책,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 점 식

기조발제

01

인격권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입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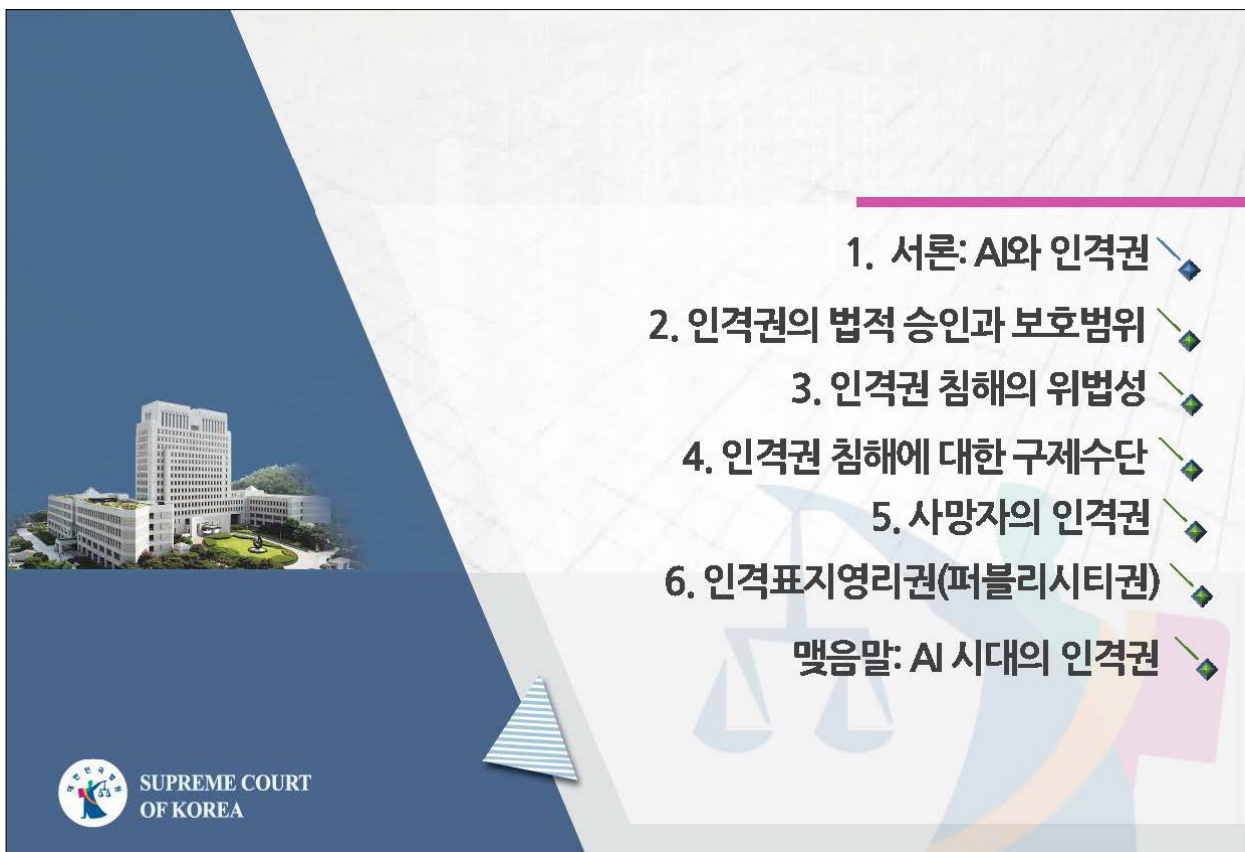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대법관)




Prof. Jae 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I 시대의 인격권 정책세미나 기조강연
AI 시대의 인격권: 인격권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입법론
김재형
2026년 4월 13일



1. 서론: AI와 인격권
2. 인격권의 법적 승인과 보호범위
3.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4.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5. 사망자의 인격권
6.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맺음말: AI 시대의 인격권



SUPREME COURT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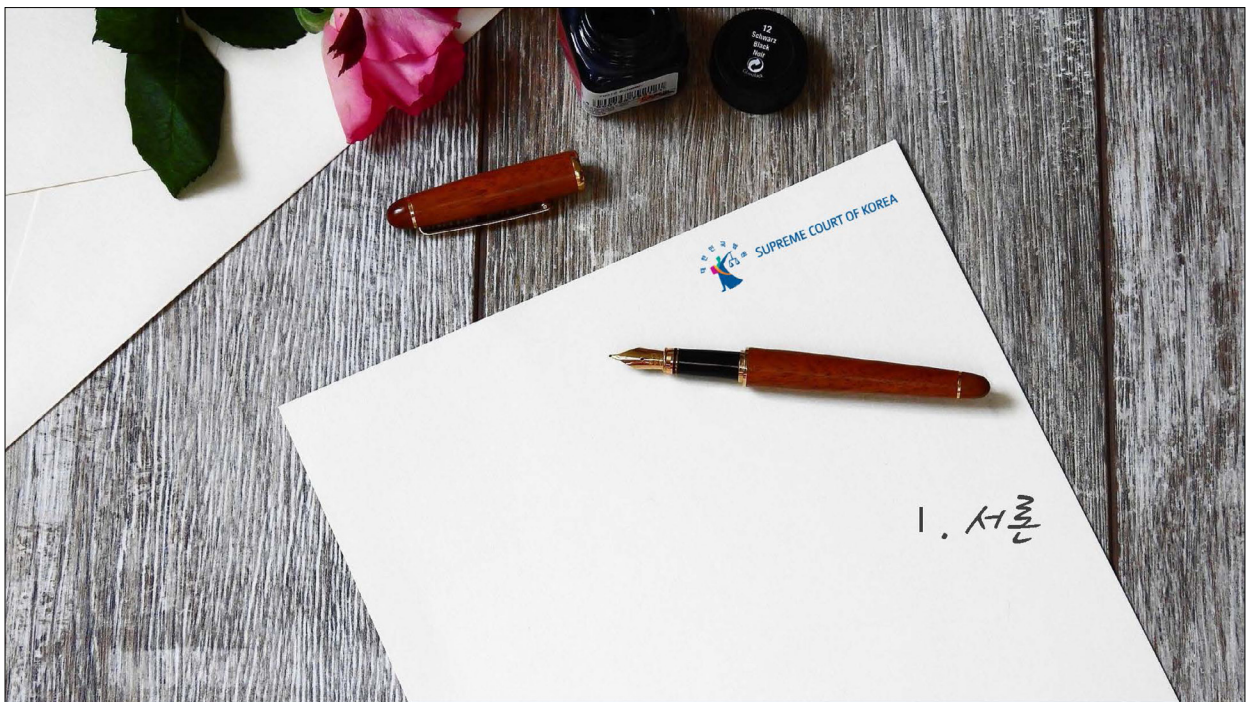
1992-1995 판사

1995-2016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2022 대법관

2023-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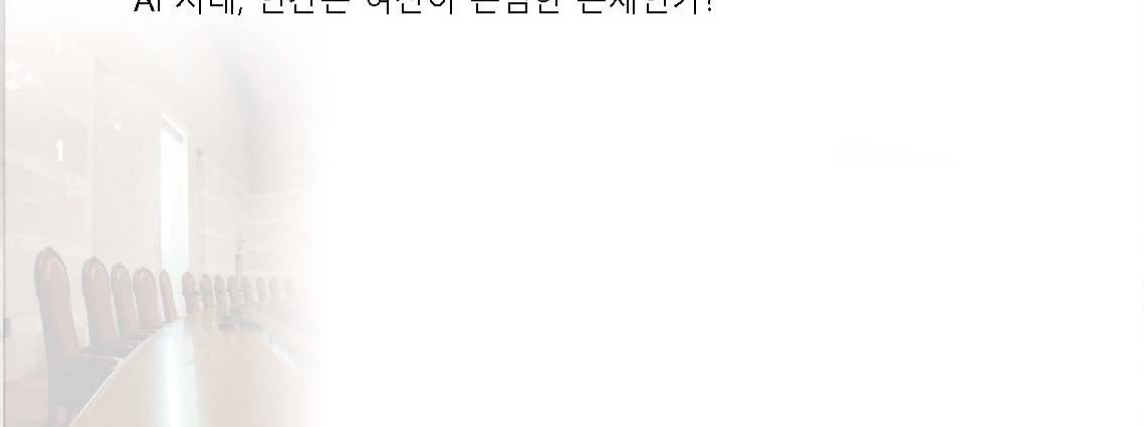
3




Prof. Jae 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AI 시대, 인간은 여전히 존엄한 존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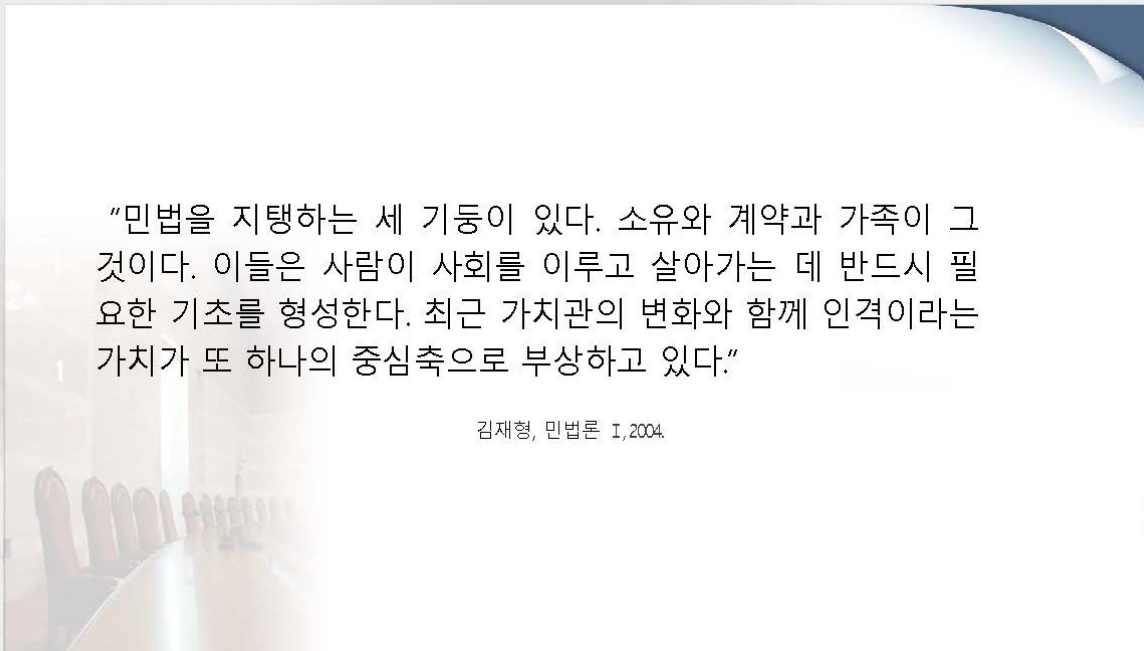


5



“민법을 지탱하는 세 기둥이 있다. 소유와 계약과 가족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를 형성한다. 최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인격이라는 가치가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재형, 민법론 1, 2004.



6

인격권의 개념

● 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
- 여기에서 인격은 사람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에 관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

- 독일의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 개념 수용
cf. 미국 - 프라이버시 또는 명예훼손으로 접근

7

현대사회의 권리

● 현대사회에서 인격권의 중요성 인식

- 인격권은 현대사회의 산물.
- 과학기술의 발달과 황색 저널리즘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였음(19세기 말)
- 2차 세계대전 후 인격권 승인
-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 중요성 부각
- 과학기술의 총아인 인공지능(AI)과 관련 기술의 융합으로 인격권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8

인격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을 규정할 필요성.
 - 법무부 민법개정안(2004년, 2022년) 또는 의원입법안(2013년, 2024년, 2025년)으로 인격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음.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입법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9

AI와 인격권

- AI 자체에 인격을 인정할 것인가?
 - 이 논의는 'AI 쇼크'라고 할 수 있음
-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활발한 논의.
- 딥페이크, 합성음성, 자동화된 상호작용으로 인격권 침해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 A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성,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10

인공지능기본법과 인격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 기본법)

제2조 제1호: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모든 과정과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11


-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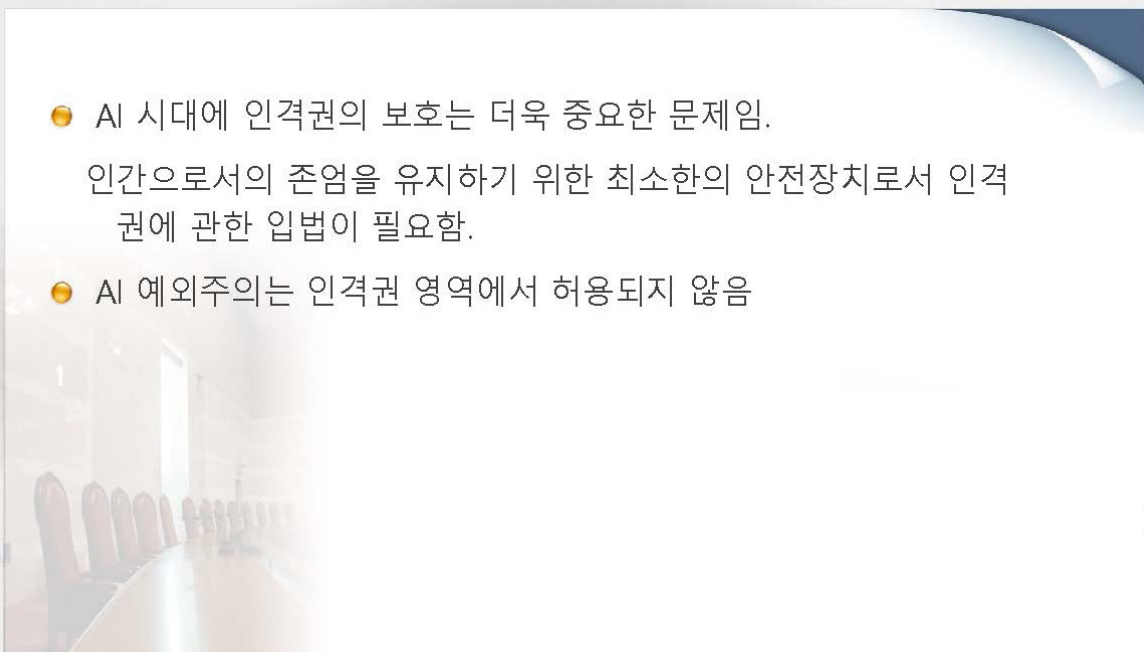
제5호: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은 대부분 인격권 문제임
-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문제 발생


12



- AI 시대에 인격권의 보호는 더욱 중요한 문제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인격권에 관한 입법이 필요함.
- AI 예외주의는 인격권 영역에서 허용되지 않음



13



12. 인격권의 법적 승인과
보호범위

SUPREME COURT OF KOREA

Prof. Jae 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의 폐해가 심각함. 피해자의 인격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딥페이크(deepfake)는 ① 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가공의 새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② AI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 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

15

인격권에 관한 입법의 미비



-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6

인격권과 개인의 자유



- 민법은 재산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격권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음
- 2011년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동아시아민사법국제학술대회)
- 한국에서는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중국 민법(2020년)은 인격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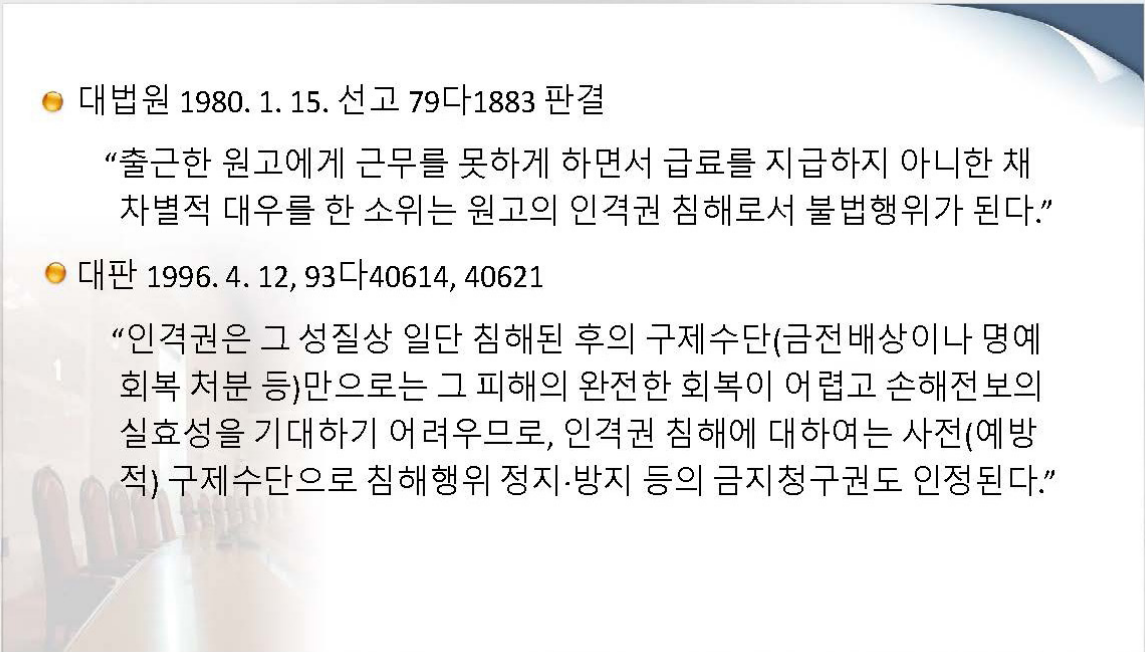


17

판례에 의한 인격권의 승인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출근한 원고에게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적 대우를 한 소위는 원고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 대판 1996. 4. 12, 93다40614, 40621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



18

인격권의 보호범위: "인격권의 포괄적 성격"

- 생명, 자유, 신체, 건강
- 명예와 인격상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성명, 초상, 음성, 대화
- 개인정보
- 자기결정권 * 성희롱
- 차별금지 등

19

인격권에 관한 민법개정 시도

-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민법개정안 제1조의2(인간의 존엄과 자유) 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 민법의 통칙 부분에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시도
- 인격권에 관한 분쟁 해결 지침으로는 불충분
- 그러나 인격권 규정 위치는 민법총칙 중 '제2장 인(人)' 부분에 두는 것이 바람직

인격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법개정안 제3조의2 (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격권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수 있음.

독일 연방대법원 2022년 판결은 이미지가 사진으로 촬영되었든 합성되었든 상관없이, 관람자에게 그것이 표현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 초상권 성립.



- 인격권은 다양한 보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AI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인격권의 여러 보호영역이 문제될 수 있음.

예: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마치 진짜처럼 보이는 영상, 음성 또는 사진 자료를 생성함.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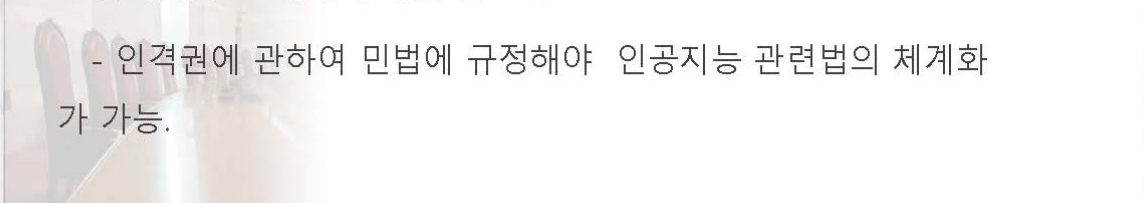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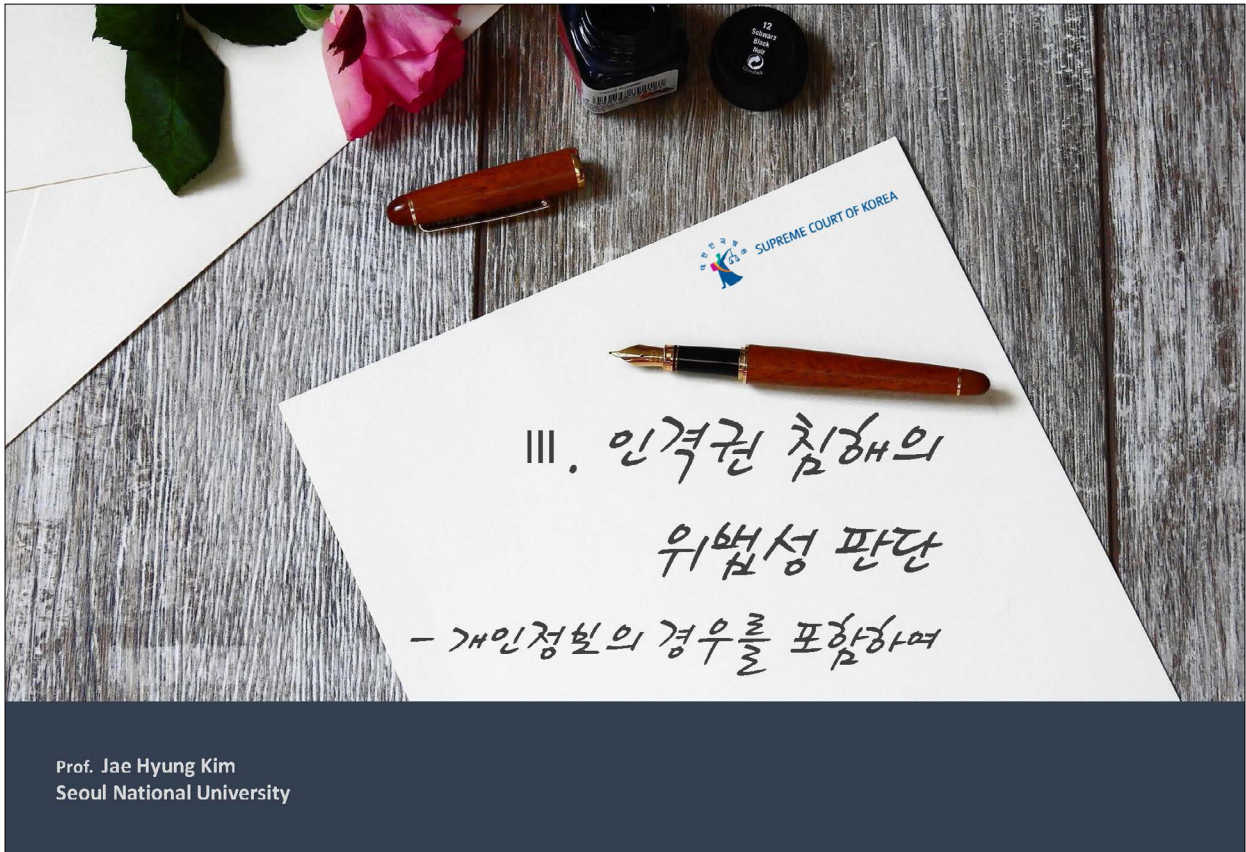
-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침해되는 중요한 기본권이 인격권임.

“새로운 기술이지만, 침해의 본질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 **인격권은 AI 시대의 기본 인프라**

- 인격권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해야 인공지능 관련법의 체계화가 가능.





- AI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그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자율적인 개별 준칙의 제정으로 가능한가?
-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준칙(2024. 12. 5.) 제7조 (권익 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개인정보,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



- (1) 인공지능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할 책임은 언론에 있다.
- (2)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한 뉴스 콘텐츠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나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 (3)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수집·공개·유포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맞춤형 서비스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5)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보 가치가 낮은 뉴스를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정보를 소비하는 시민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명예훼손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상당성 법리**
 - * 대법원 판결(1988년)
 - (1)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공익성과 진실]**
 - (2)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당성]**

명예훼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공인(公人)과 사인(私人)에 대한 차별적 취급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 미국의 공인(public figure) 이론을 일부 수용하였으나, 동일하지는 않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3

표현의 자유

● 대법원 2018. 10. 30.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4

“숨 쉴 공간”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공간”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35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2018년: “전면적 공적 인물”이라는 표현 최초로 사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자의 정치적 이념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와도 상관없는 문제이다.

-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 결정.

사생활 침해

●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 (1) 피해자의 동의
- (2)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 (3) 공적 인물의 문제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재벌그룹 부회장의 약혼식

- 부회장은 공적 인물
-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 부회장 약혼녀의 사진 게재는 초상권 침해
- 그 밖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부정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민법개정안

- 인용의무에 관한 규정
- 침해의 수단·목적이 위법한 경우
- 피해자의 동의와 그 한계
- 명예훼손의 위법성 배제사유 : '공익성', '진실 또는 상당성'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민법개정안

제3조의3(위법성의 배제 등) ① 인격권의 침해 정도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성질상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침해의 수단이나 목적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

③ 언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媒體)에 의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제2조 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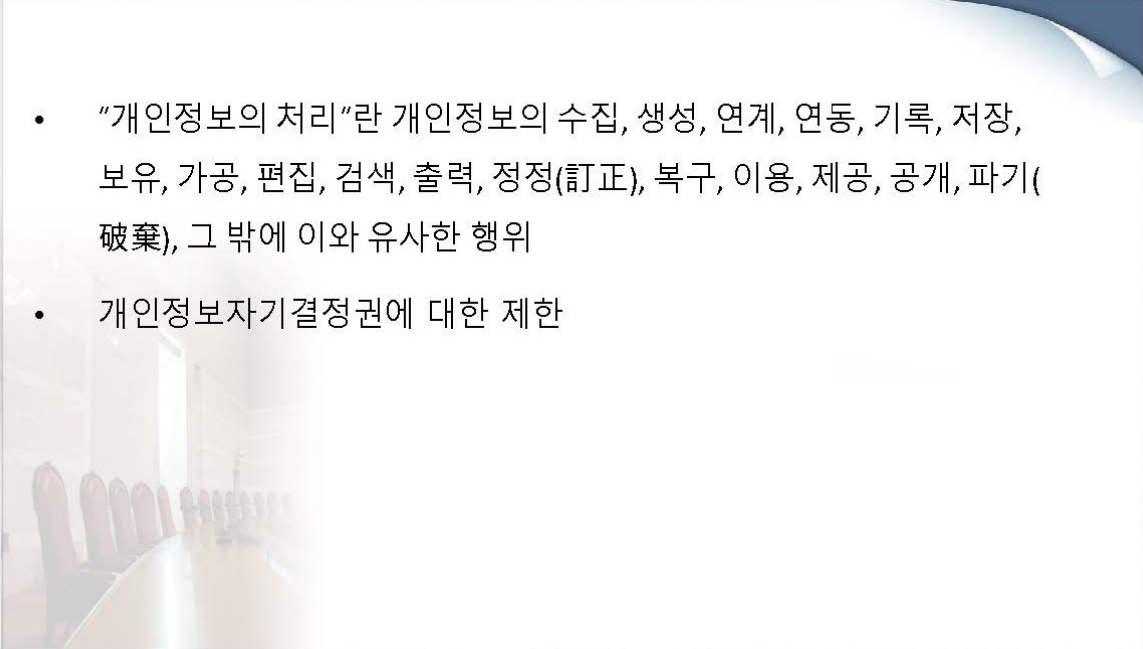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제1호의2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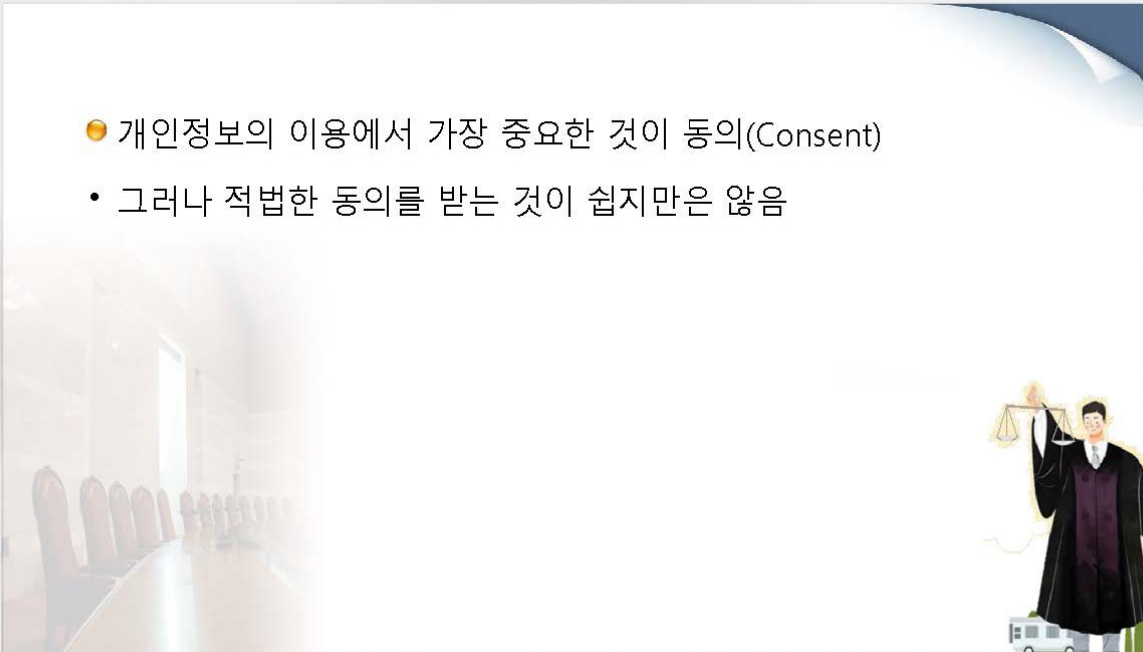


45

개인정보와 동의



- 개인정보의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의(Consent)
- 그러나 적법한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46

홈플러스 사건



- 1mm 크기의 글자, 보입니까?
- 1mm 크기의 글자, 보입니까?
- 1mm 크기의 글자, 보입니까?



Prior Informed Consent



	설명 의무	동의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	의사의 설명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수집자의 설명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개인정보에 응용한 것임

홈플러스 사건

-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매를 하던 중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짐
보험회사(라이나생명, 신한생명)에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에 제공하기로 약정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목적은 숨김(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음)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은 **응모권 뒷면** 이나 **인터넷
응모화면에** 읽기 어려운 **약 1mm 크기의 글씨로만** 고지

49

대법원 2017. 4. 7. 판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함께 진행
- 행정사건: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 고객감사 차원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하급심 적법/대법원 상고기각
- 형사사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이 문제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
반 여부: 하급심 무죄/BUT, **대법원 파기환송**

50

홈플러스 판결

- 개별적 판단방법(X):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51

Prior Informed Consent


Consent	Good
Fraud	Bad

- 회원가입, 경품 행사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한 것이어야 한다. - 거짓이나 기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52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중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53

ஹஹஹஹ 판결



● **총합적 고찰방법(0):**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려사항:

-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

54

공개된 정보와 상업적 이용

● [사안]

- 원고는 ○○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임.
- 피고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앤비'를 운영하는 회사
 - 피고는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
 - 이 사건 개인정보는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 원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55

로앤비 검색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LAWnB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AWnB | 로앤비'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tabs for '판례', '법령', '문헌', '법조인', '서식', '행정자료', '기업법무', '뉴스', and '해외법률'. The '법조인' tab is selected, and the page displays a search result for a lawyer named '이은' (Lee 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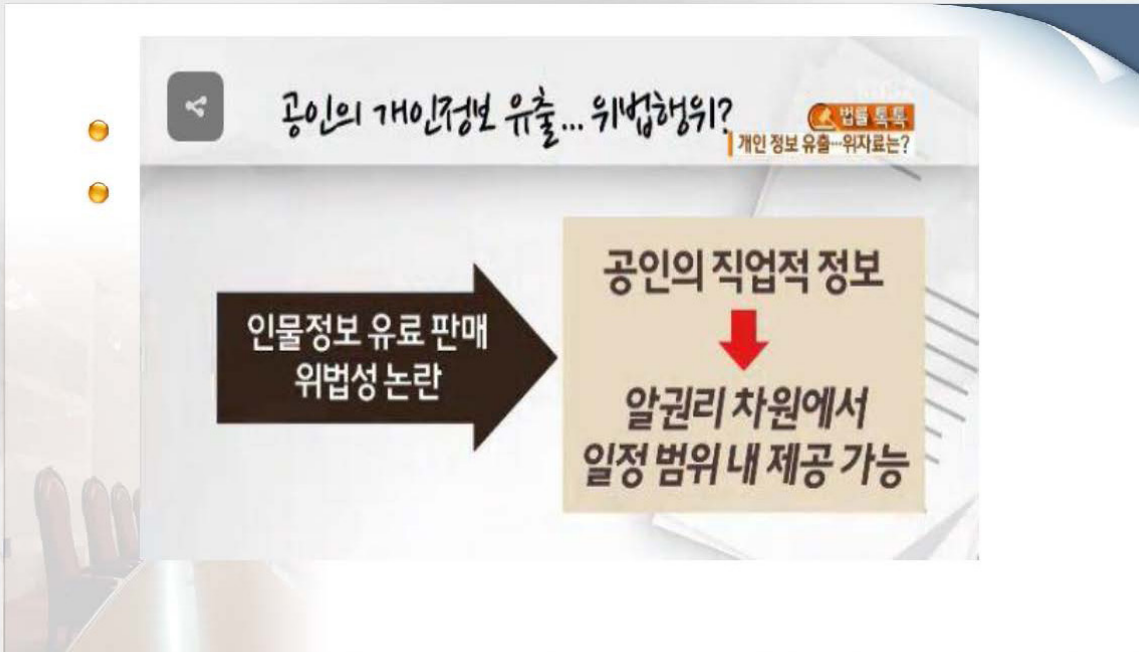
The lawyer's profile information is as follows:

이름	이은 (이은영+수정됨)	성별	여자
출생연도	1972년생	지역정보	
현직	변호사	전문분야	
주요취급분야			
사법정보	사법종류: 사법시험	횟수	32회
	사법연수기간수: 22기		

Below the profile information, there is a message box stating: '본 서비스는 정회원 이상의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고객님의 자격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그인 하시거나 로앤비 회원가입신청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buttons for '로그인' and '회원가입'.

56

대법원 2016. 8. 17. 판결



57

대법원 판결 이유

- 책임 부정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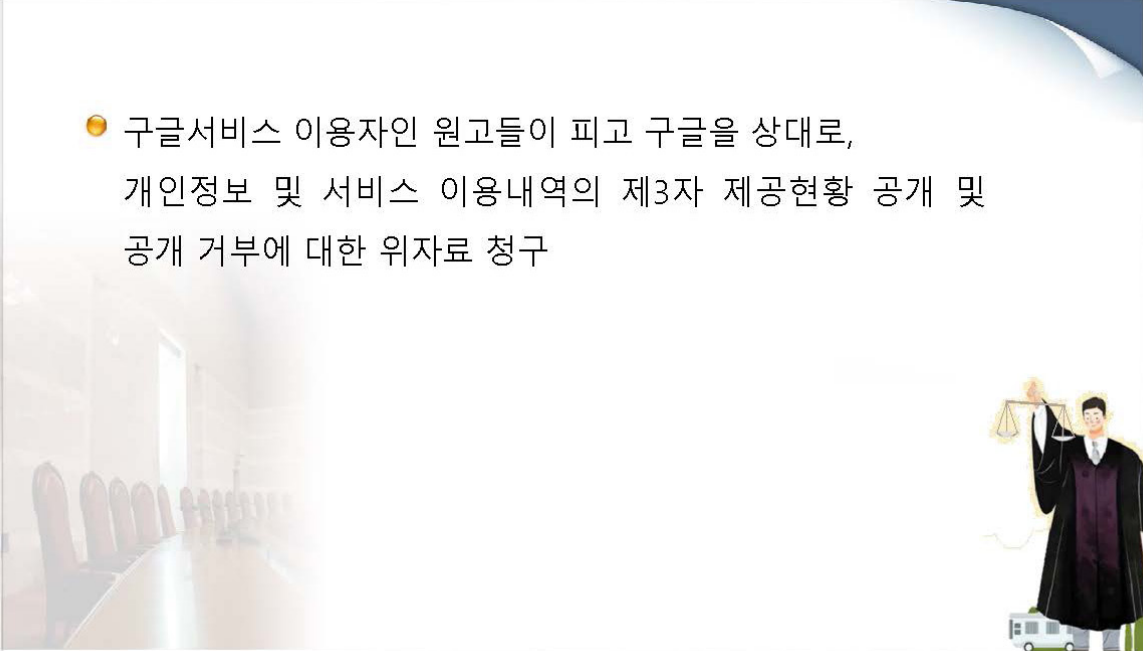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58

구글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여부



- 구글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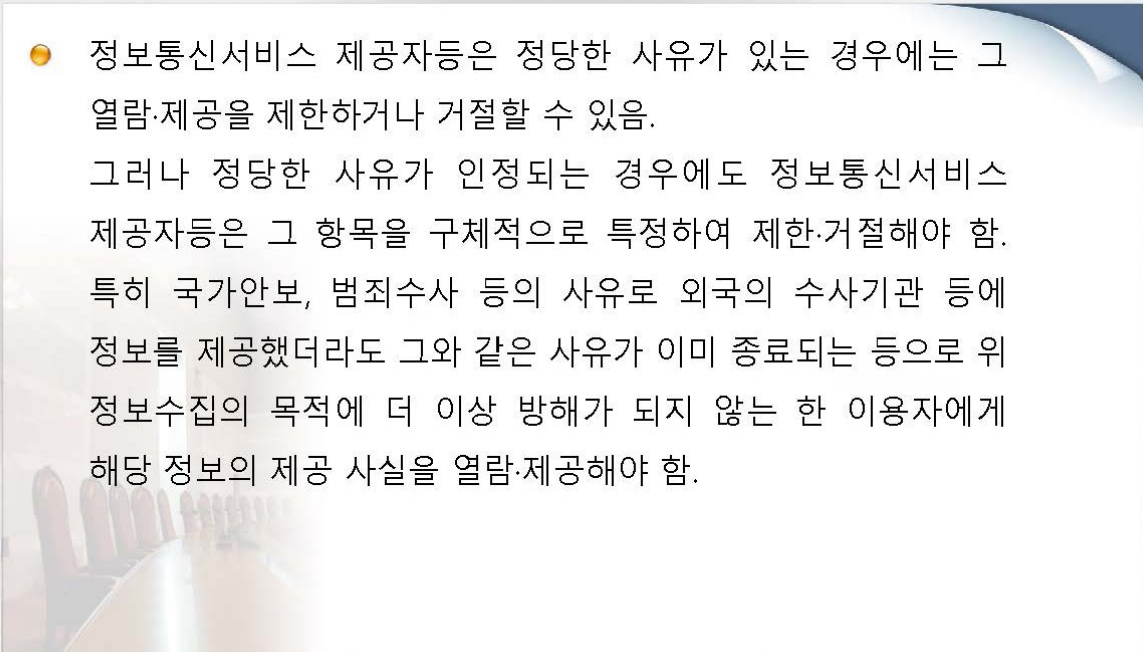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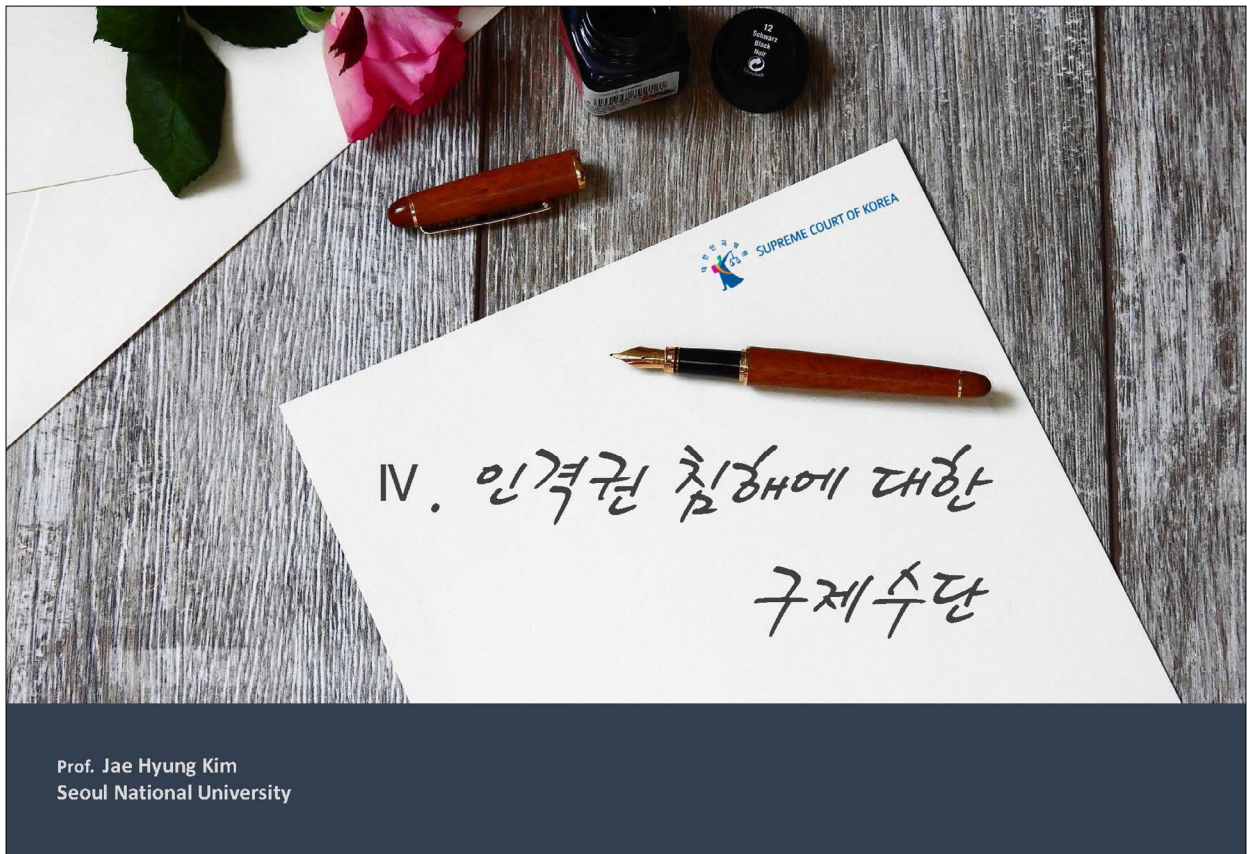
대법원 2023. 4. 13. 판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해야 함.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다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해야 함.



60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 위자료 산정 문제
- (2) 금지청구권
-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4)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금지청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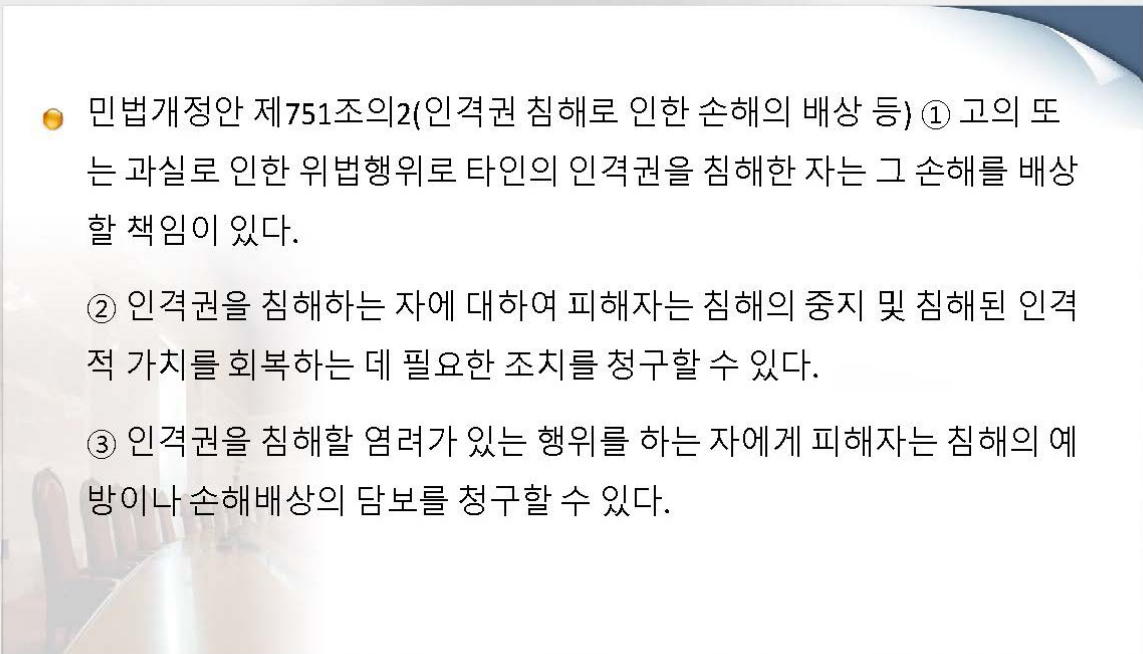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



- 민법개정안 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해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과 인격권

-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논란이 되었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가 문제.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 AI의 등장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트위스트김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음란사이트로 인식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도록 하였음.

-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검색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의 접속을 매개하였음(이하 '이 사건 검색서비스 제공행위')



-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원고의 예명인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에 이용하고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는 원고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 위자료 1000만원 또는 500만원씩 인정.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음

67



-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사건 검색서비스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피해신고 등의 요청 없이도 일반적·사전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을 부정하였음.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대판 2001. 9. 7, 2001다36801 :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전자게시판에 올린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03. 6. 27, 2002다72194 :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태도 변경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사안]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NHN,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음.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있었음.

원심 : 책임 인정

대법원 : 상고기각(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다수의견

-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

-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삭제 및 차단 요구가 없어도 책임 인정)

- 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 ②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삭제, 차단 의무)가 발생

별개의견

- 별개의견 :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책임

- AI를 이용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예: 딥페이크)

- 소송 상대방 (1) 실제 제작자, 업로더, 소셜 네트워크상의 유포자, 그리고
(2) 플랫폼 운영자

* 플랫폼의 면책 여부와 그 요건은?

플랫폼 운영자의 삭제 또는 차단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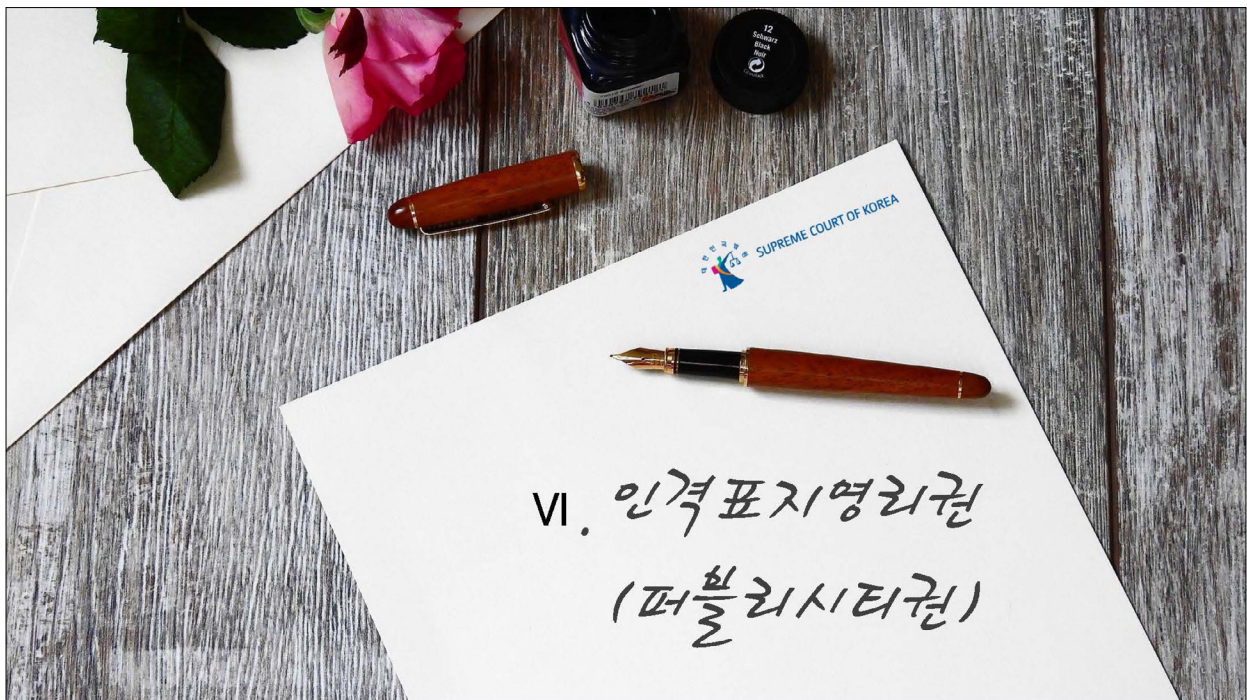
인격권 침해의 통지를 요건으로 해야 하는가? 통지 없어도 알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사망자의 인격권 인정 여부
민법 제3조와의 관계
사망자의 인격권을 긍정하는 방법과 유족의 인격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 사망자의 인격권 인정요건
생존자에 대한 경우보다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있어야 함
- 사망자의 인격권 침해의 효과
금지청구권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민법개정안

- 제751조의3(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제75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청구권을 행사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 ④ 제1항의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Prof. Jae 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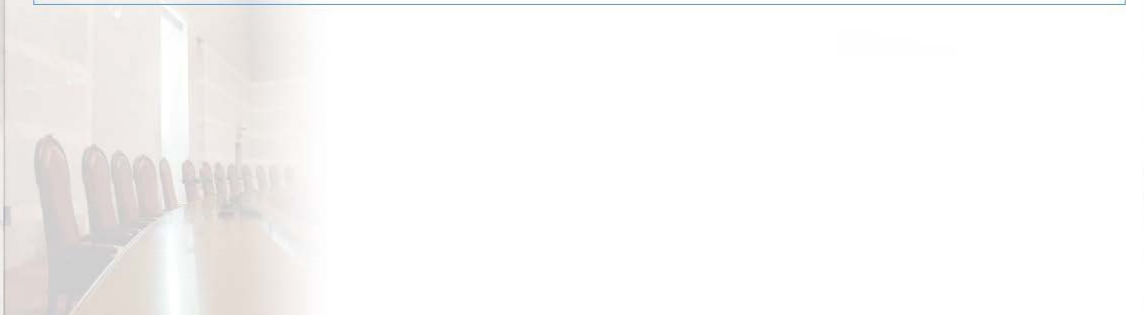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개인의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징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 1995년 이휘소 판결(“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 그 후 하급심 판결 혼란
 - 양도, 이용허락과 상속에 관한 논란
 - 보호기간 설정 문제



-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이용허락과 상속
 - 인격적 징표를 이용할 권리는 재산권의 성질도 있음.
 - 양도 허용 방안과 이용허락 방안이 있음
 - 상속성에 관하여는 부정한 판결과 긍정적인 판결 있음
 - 상속성을 긍정하면서 사후 3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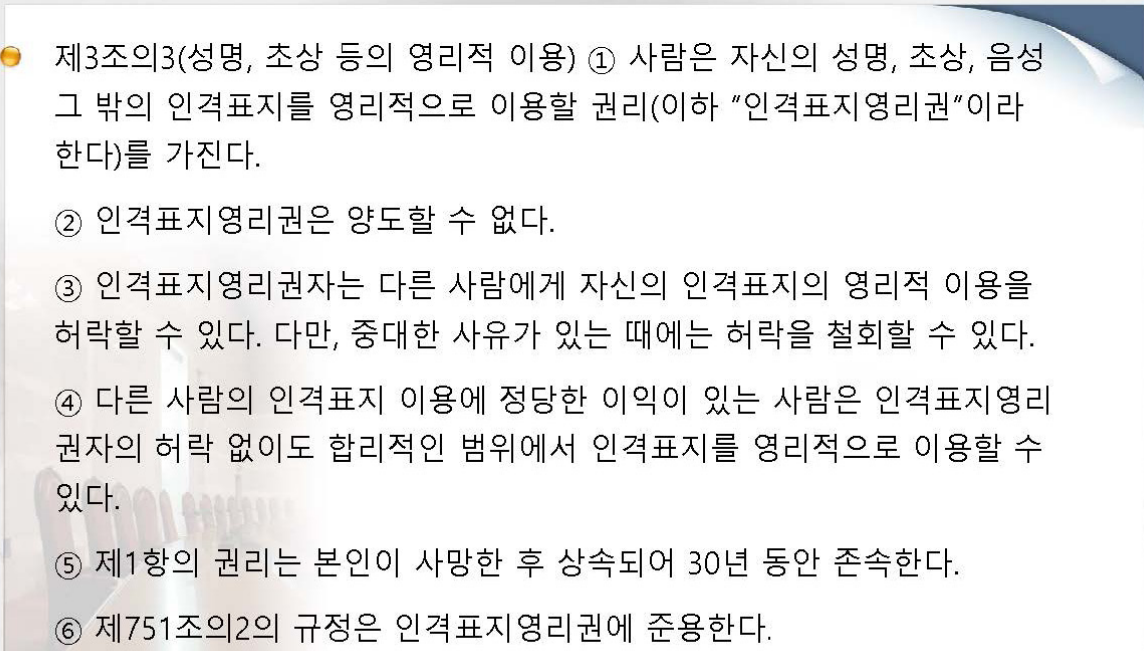


- 입법 필요
 - 법적 근거 명확화
 - 시장 형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가능
 - 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제3조의3(성명, 초상 등의 영리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 ⑥ 제751조의2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 v. "오랫동안 예견되어 온 미래"

84

SUPREME COURT OF KOREA

As the court of last resort of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upreme Court is highest judicial tribunal in the n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courts in Korea - the district courts, the family court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The courts of original jurisdiction are the district courts.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01

AI시대 복지의 근거로서의 인격권

정란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박사)

AI시대 복지의 근거로서의 인격권

정 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인공지능(AI) 기술의 행정적 활용은 단순히 국가 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수단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헌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 생존권 및 사회권과 직결된 사회보장 및 복지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수급 자격의 자동 심사, 부정수급의 정밀 탐지, 미래 사회위험군 예측, 그리고 급여 및 서비스 전달의 자동화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복지 전달체계의 정교화와 행정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개인을 방대한 데이터의 집합체이자 행정 관리의 객체로 치환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서 AI는 고객지원(챗봇 등), 행정업무 자동화, 부정수급 탐지에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수요·충격 예측, 조기개입과 같은 예측분석이 확대될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담론에서 복지행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라는 급부권적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복지 수급자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선별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침해는 단순한 급부의 거절을 넘어선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미 제10조를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으로 파악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상위적인 규범 근거로 이해해 왔다.¹⁾ 이와 같은 판례 구조는 복지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거나 자기결정의 실질을 침식하는 경우, 제10조가 독자적이고도 최상위의 통제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1) 이세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106호, 2022.

자기보호권, 자기결정권 등을 파생시키고,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결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한 사례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격 침해 위험에 대응하는 강력한 헌법적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OECD는 2025년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인간 중심성, 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 그리고 인간의 감독을 신뢰 가능한 공공부문 AI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며 기술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²⁾ 인공지능 시대 복지의 헌법적 근거를 기존의 제34조 중심 급부권 논리에서 제10조 중심의 인격보장 논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II. 복지행정 내 인공지능 도입의 현황과 기술적 매커니즘

1.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복지 구현

현대 복지행정에서 인공지능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복지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에 있다. 2014년 ‘송과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함에도 국가의 제도적 망에 포착되지 않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인공지능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통신비 연체 등 각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분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높은 확률로 예측해 낸다.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은 사회복지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해방된 사회복지사들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³⁾ 그러나 이 매커니즘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밀한 정보를 국가가 상시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므로,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2. 자동화된 의사결정(ADM)과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

2021년 ‘행정기본법’ 제20조를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⁴⁾ 특히 동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

2) 홍석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고 80집, 2023.

3) OECD, AI and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in OECD Countries,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No. 42, June 2025.

4) 2021년 ‘행정기본법’ 제20조를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있어, 복지 급여의 지급이나 자격 박탈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처분 가능성이 일반법 차원에서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복지행정의 상당 부분은 법령상 요건 충족 시 급부를 지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적 구조를 가지므로 인공지능의 개입 여지는 매우 넓다.⁵⁾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처분은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함께, 알고리즘의 오류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인간 공무원의 개입 없이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대립한다.⁶⁾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은 복잡한 다차원적 변수의 결합 결과이므로, 전통적인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이행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불복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III. 인공지능 복지행정의 구조적 위험과 헌법적 갈등

1. 인간의 데이터화와 ‘객체공식’의 형해화 위험

헌법상 인간의 존엄은 인간을 국가 권력 행사의 단순한 수단이나 객체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⁷⁾ 복지 AI 환경에서 시민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가진 인격체라기보다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데이터 포인트로 환원된다. 특히 예측 행정은 개인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단하므로, 인간의 변화 가능성과 주체적 의지를 배제하고 통계적 확률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기계가 내린 ‘접수’에 의해 생존권이 좌우되는 상황은 인간의 주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 수급자를 시혜의 대상이자 관리의 객체로만 보았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복지 모델로 회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⁸⁾

5) 유동훈,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제, 2022.

6) 법률신문, 강한 기자, “AI가 행정처분?... 적법절차 침해 우려-민변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 의견’ 국회 제출” (2020.11.6.)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36>

7) Orwat, Carsten, “Algorithmic Discri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Dignity”, Social Inclusion 12, 2024, <https://doi.org/10.17645/si.v12i0.7160>

8) Ball, S., & Hannah, A., “Robodebt: administrative harm and Australian social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0(2), 2025.

<https://doi.org/10.1080/10361146.2025.2542739>

2. 알고리즘 편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

인공지능의 편향성은 데이터의 품질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다. 복지 데이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을 반영하며, 여기에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다. 만약 특정 인종, 성별, 혹은 빈곤 지역 거주 여부가 부정수급 예측의 지표로 작용한다면, 인공지능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과학적 객관성’의 이름으로 고착화한다.⁹⁾ 네덜란드의 SyRI 시스템 사례는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시스템은 주로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법원은 이것이 특정 계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¹⁰⁾ 호주의 로보데트(Robodebt) 사건 역시 데이터 매칭 오류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부정수급자로 몰아넣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¹¹⁾

3. 감시 사회의 도래 위험과 위축 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민의 모든 결제 내역, 에너지 사용량, 의료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체계는 상시적 감시망으로 작동한다. 시민들은 국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위축 효과’를 겪게 된다. 이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억제하며, 특히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일수록 국가의 정보 지배에 더욱 강력하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9) Jon Henley and Robert Booth, The Guardian, “Welfare surveillance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Dutch court rules.” (2020.2.5.)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0/feb/05/welfare-surveillance-system-violates-human-rights-dutch-court-rules>.

10) District Court of The Hague, NJCM c.s. v. The State of the Netherlands (SyRI), 5 February 2020, C/09/550982 / HA ZA 18-388, ECLI:NL:RBDHA:2020:865

11) Ball, S., & Hannah, A. “Robodebt, administrative harm and Australian social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0(2), 2025.

<https://doi.org/10.1080/10361146.2025.2542739>

IV. 헌법 제10조 중심의 인격보장 논리로의 재구성

1. 헌법 제10조의 통제 규범적 역할과 사회권의 연계

복지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규율하는 주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지만, 제10조는 국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설정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복지가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기계의 종속물로 만들거나 존엄성을 훼손한다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10조는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방식’을 통제하는 상위 규범으로서 작용하며, 사회권의 실질적 구현이 반드시 인격권의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함을 명시하는 지침이 된다.¹²⁾

2. 일반적 인격권의 디지털 확장- 독일의 시사점

일반적 인격권은 성명, 명예, 초상 등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하고 실현할 포괄적 권리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 권리는 ‘디지털 인격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BVerfGE 120, 274 판결을 통해 국가의 정보기술 시스템 침입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컴퓨터 기본권’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은 복지 수급자가 국가의 데이터 시스템에 편입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정보와 운명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헌법적 방어권으로 기능한다.¹³⁾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공지능 복지 행정의 핵심적인 통제 장치이다. 국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데이터 최소화 원칙), 수집된 정보가 원래의 목적 외에 다른 행정 목적이나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자신의 정보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권리를 가지며,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 정정할 수 있는 정보적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12) He, J., Zhang, Z., “Algorithm Power and Legal Boundaries: Rights Conflicts and Governance Response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ws* 14(4), 2025
<https://doi.org/10.3390/laws14040054>

13) 이부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고찰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미디어와 인격권* 8(3), 2022.

3. 국제적 규범과 신뢰 가능한 AI 원칙

(1) OECD의 2025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OECD는 2025년 보고서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뢰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간 중심성(Human-centric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있다. OECD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자율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하며, 특히 사회보장과 같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반드시 인간 공무원이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이 일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결정 근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2) EU AI Act와 고위험(High-Risk) AI의 규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은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분류하여 엄격한 규제를 부과한다. 고위험 AI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인간의 상시적인 감독(Human Oversight)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사후에 책임을 묻는 체계적인 법적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V. 결론에 같음하여 - 존엄한 복지를 위한 인격권

앞서 검토를 중심으로 디지털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복지 대상자를 단순한 관리 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인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나아가 인간 개입(Human-in-the-loop) 절차가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바,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에서는 반드시 인간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 기계의 결정은 제안일 뿐이며, 인간이 해당 결정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인격적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성격, 성향, 미래 행동을 기계적으로 단정 짓는 과도한 프로파일링을 금지하고, 각 개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적 구제 절차’를 상설화해야 한다.

정보적 자율성의 보장을 위하여, 시민은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전적인 자동 처분 대신 인간에 의한 대면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는 기술 소외 계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게 특히 필수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디지털 자기결정권 강화의 측면에서, 복지 수급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연계되고 분석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동의를 철회하거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적법절차의 준수 차원에서 설명가능성과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의미 있는 설명권(Right to meaningful explanation)을 통해 국가는 단순히 시스템이 사용되었다는 고지를 넘어, 어떤 데이터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리즘의 주요 로직은 무엇인지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복지 알고리즘의 설계 및 도입 단계에서 시민 단체, 수급자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여 편향성을 검토하고 공정성을 심의하는 ‘알고리즘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가의 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국가는 AI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¹⁴⁾ 만약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검증 장치를 전혀 두지 않거나,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 실효적 권리구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복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신속하게 이를 교정하고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독립적인 행정 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¹⁵⁾

우리는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법의 시행에 맞춰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영향 AI’로 지정될 복지 심사 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수준의 투명성과 인간 감독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또한 행정기본법상의 ‘자동적 처분’ 규정과 인공지능기본법상의 ‘권리 보호’ 규정 사이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

14) 문익빈,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5(1), 2023.

15) Chowdhury, S., “Technology is never neutral: Robodebt and a human rights analysis of automated decision-making on welfare recipients”, Australian Journal of Human Rights, 30(1), 2024. <https://doi.org/10.1080/1323238X.2024.2409620>

울성이 국민의 인격적 가치를 압도하지 않도록 세밀한 입법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¹⁶⁾ 인공지능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지능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기술의 화려함 속에 인간이 데이터의 조각으로 파편화되고, 알고리즘의 통제 하에 자율성을 상실한다면 그 복지국가는 더 이상 헌법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복지를 단순한 물질적 급부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사회적 실현’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행정은 헌법 제10조를 나침반 삼아, 기술적 효율성보다 인격적 가치를 상위에 두는 ‘존엄 중심의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우리 사회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디지털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는 ‘신뢰 가능한 지능형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법학, 기술학, 윤리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AI 복지결정의 법률근거·명확성 강화, 위험비례적 통제모형의 법제화, 설명·불복·재검토의 실효성 확보, 독립적 감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결합한 “인격권-친화적 복지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16) 유동훈,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제, 2022.

토론

01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 기술)

토론

02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이정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토론

03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김재민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서기관

토론

04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황 성 필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1. 들어가며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재형 전 대법관님의 기초발제를 통해 인격권의 형성 및 전개, 입법론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었고, 정란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 AI시대에서 진정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권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법상 인격권 관련 논의경과 및 필요성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민법상 인격권 관련 논의경과

정부는 2004년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170611)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 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25350)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제19대 국회에서는 최원식의원안(의안번호: 1906496), 제21대 국회에서 윤미향의원의원안(의안번호: 2117124)이 발의된 바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김현정의원안(의안번호: 2204218),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2213878)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2004년 「민법」 개정안은 제1조의2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1조의2 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위 개정안은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수정없이 발의된 것으로, 당시 ‘민법 개정시안’에 대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¹⁾

먼저, 제1항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리를 개별법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며, 당연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인격권 규정의 신설에는 찬성하고 추상적 선언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효용성의 측면에서 권리보호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통칙편에 너무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제21대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대국회에서는 김현정의원안(의안번호: 2204218)²⁾ 및 박희승의원안(의안번호: 2213878)³⁾이 발의되었는데, 김현정의원안은 제21대국회의 정부안과 같이 인격권 및 인

1) 법무부, “民法(財産編) 改正 資料集”, 2004, 11.

2) 안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안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3조의3(성명·초상 등의 영리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정한 반면, 박희승의원안은 이에 더해 인격표지영리권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명문의 인격권 법규정 필요성

인공지능은 복지국가 시대에 있어 과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지능화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AI 기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종국적으로는 헌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습니다.

정란 박사님의 발제문이 지적하듯,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데이터 연계는 개인의 결제 내역, 에너지 사용량, 의료 기록 등 방대한 정보를 국가가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이 특정 개인을 부정수급 위험군으로 분류하거나 복지 수급 자격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행위는, 그 판정이 오류에 기반한 경우 해당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여기에서 ‘인격’에는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등에 관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복지국가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가치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751조의2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안 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해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⁴⁾이 있어왔습니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경과하여 충분히 숙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국가 시대에서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조치이므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AI에 대한 인격권 인정가능성 관련

AI에 인격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인간의 기능을 구현하므로 인정하자는 견해와 근본적으로 자연적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자는 견해가 다음과 같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⁵⁾

AI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법인에게 인격권적 이익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AI에 대해서도 기능적 접근을 통해 제한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바, 인간본질론의 관점에서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체계상 AI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의견대립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에게 법 인격을 부여할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안문희·이성범·김나래,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1, p.87

“2014년 개정시안 과정에서도 인격권에 관한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하였다. 이미 개별 법령이나 판례를 통하여 인격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민법에 선언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거나, 인격권에 관한 조문화가 오히려 현재 판례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인정되는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인격권이 사법 질서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민법에서도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개정시안에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 손경한·조용진 편저, 「과학기술법 2.0」, 박영사(2021년), pp.607~610. 참조

토론

05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양 희 철 | 법무법인 명륜 구성원 변호사

1. 인공지능의 발달과 인격권의 함의

헌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가슴 속에서 벅찬 감동을 한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벅찬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가는 나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까지 갖고 있다니 비록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라도 배부른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더 촘촘하고,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기도 했습니다. 민법 판례를 보면서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인격권이 어떻게 구체화하고, 타인의 기본권이나 정부 정책과는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루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교수님께서 기초 발제에서 잘 보여주셨듯이 인격권은 구체적 사건을 통해 추상적 개념에서 실질적 권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격권이 이정표라면,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은 인격권 구현을 위한 이정표를 따라가는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 집적되었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격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대응이라 보입니다.

기초 발제 내용을 보다가 맺음말에 AI에 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화두를 던지신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학위 논문의 주제이자, 제가 계속 관심의 끝을 잡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의가 바로 내일 실생활에서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이에 발

맞춘 사회의 변화로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 복지국가 구현의 수단인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의 행정에 미친 영향이 이미 크지만, 향후 세 부적인 영역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미칠 영향은 더 광범위할 것입니다. 특히 프로파일링의 경우 인공지능 기본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인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됩니다.

주제 발표에서 정란 박사님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프로파일링은 학습데이터와 분석 데이터의 질과 양에 따라 정확도가 좌우됩니다. 불완전한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한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큰 불이익을 남기게 되고, 정부의 정책과 처분에 대한 신뢰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러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본법이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잘 정제된 데이터를 국가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자동화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생존을 의탁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는 구조(Human-in-the-loop)를 설계하겠지만 대다수 기속행위인 복지행정에서 이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기계적 승인의 유혹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부담을 안게 되어 의사결정의 사실상 주체가 인공지능으로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판단 구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확인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모델보다 적은 수의 매개변수를 가진 모델로 판단 과정 일부를 추측하는 것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복지 급여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나 처음부터 지급에서 배제된 경우 적법절차 원칙상 그 처분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현재 수준에서는 명확한 이유 제시가 어려워 의미 있는 설명권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연료이자, 혈액이지만 인간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는 존엄한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인격권의 제약하에서 수집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제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국민은 효율적 행정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수단 이 되고,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헌법의 인간 존엄성 조문은 사문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가운데, 해당 주제에 관해 깊이 연구하신 주제발표자께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된 행정처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분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기존 행정절차와 불복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론

06

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오성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AI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오 성 현 |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KAIST 및 한양대학교 겸직교수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약계층의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I로 인해 공적영역의 자원과 시간이 절약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아지고 있음을 이미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상에 없던 AI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고, 현재의 음성기반(call) 서비스를 넘어, 조만간 피지컬 AI 기술도입과 확산이 복지 분야의 중요 화두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현시점에 AI를 복지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이를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인격권을 AI 시대 복지의 근거로 삼자는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적영역에서 복지 관련 AI를 사용하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제공이 주가 될 것으로 보여서, 개인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공적영역에서는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찬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빠르게 인지하여야 한다. AI가 오작동할 경우, 공적영역 특히 복지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클로바 케어콜이 나왔을 때 고독사 예방, 응급실 방문 감소, 정서적 지지 등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었고, 이는 현재도 유효하다. 하지만 수많은 개인정보보호, 특히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서비스에서 정보 유출이나 기능 오류가 생길 때의 혼란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대참사일 것이다. AI의 콜은 응급 상황시 연결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언제 인간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인간성(humanity)에 대한 논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에 대한 담론일 것이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철학, 윤리학의 과제일 것이다. 반면 법적인 권리인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발제자의 발표처럼 헌법 제10조 중심의 인격보장 논리는 AI시대 복지의 근거가 되거나 AI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AI에 인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

작 있었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방향을 못잡은 것으로 보이고,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며 이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복지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은 인간 누구의 지능을 모델로 설계되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적어도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시대의 흐름, 인격권의 입법 배경과 학문적 논의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인간지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중요한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정이 있고, 불평등에 대한 편향성 없이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가 적용된 이후에 AI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순서다. 현재 사회의 불평등이 포함된 데이터로 AI가 훈련되고 있으며 AI의 답변이 불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

AI가 활용된 복지국가에서는 재원을 분배하고,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일 것이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 및 대응전략 마련이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이 극적인 효율화는 인간이 아닌 AI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이 다수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AI가 잘하는 결정과 사람이 잘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을 구별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AI시대 복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성이 문제된다. 국가는 AI를 활용하여 복지분야에서의 정책을 결정할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결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에 의한 정보사용과 AI 활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외부 견제(시민단체 등)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각 기관의 역할을 보자면 국회의 역할은 자명해 보인다. 국회가 정부와 AI기업, 국민 사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단순한 가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거나, AI기본법에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복지 특화 AI에 적용되는 별도의 가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 때는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협력범위, 모범사례의 적극 발굴 및 오남용과 부작용을 신속히 발견하여 선제적인 대응까지 가능한 선진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멤버십 제도(2026년 3월 기준 안내대상 복지서비스 163종)는 이제까지 단순히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 안내하는 제도였다면,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현재의 기능도 당연히 고도화가 될 것이며, 수많은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 제정에 있어서 이런 기존 제도에 AI의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I의 작동원리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AI 도입 기준과 AI가 도출한 결과값의 생성 근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신속상용화 지원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나 AI가 작동하는 원리, AI의 산출 결과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AI스마트홈 돌봄, 고령친화기술(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과 관련된 AI는 24시간 대상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자동화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고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I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는데도 기술의 한계상 불평등과 편향성, 사회의 편견만 심화하는 결과물이 이례적으로 발생한다면, AI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에 못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간이 더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대비한 가이드가 정해져 있어야 국가정책이 우왕좌왕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의 가장 상단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정과 인격권의 보호를 위치시키고 모든 담론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인격권-친화적 복지행정’은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성이며, ‘존엄 중심의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신뢰가능한 지능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규제 선진국’은 칭찬이 아니다. AI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나뉘었다. 복지 분야에 특화된 가이드의 제정은 전세계적인 경향과 입법 사례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우리나라가 굳이 늦게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I 기술을 통해 복지를 촉진하는 입법, 가령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고, 재원을 투입하는 입법이나 가이드 제정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AI기본법 제12조에도 근거를 두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다. AI를 복지분야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수준은 1인당 GDP 금액이 아닌 그 사회의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AI시대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상될 복지의 수준이 기대된다. 기대가 커진 한편에서는 효율성의 과도한 추구가 인격권의 침해나 복지정책의 편향성만 공고히 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가이드 제정 등 규제 담론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